

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

(서희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8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6월 일

발 의 자: 서희경, 안극수, 정용한, 이영경,
김보석, 추선미, 안광림, 김보미,
구재평, 박주윤, 김종환, 박종각,
김장권 (이상 13명)

제 정 이 유

-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고용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가. 성남시장의 장애인 고용증진에 관한 책무를 명시함(안 제4조)
- 나.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사업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다.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도·감독에 대해 명시함(안 제11조)

제 정 조 례 안 : 붙임

신 · 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관 계 법 령 발 취 서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8호, 제3조, 제22조의3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 제3조, 별표 2

성남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남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 표준사업장”이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
2. “공공기관”이란 성남시, 시의 공기업, 시의 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시의 공기업
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의 출자·출연기관
4. 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

제4조(책무) ① 성남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의 공기업 및 출자·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·출연,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·용역 우선구매,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사업)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·운영하기 위한 출자·출연
2.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, 용역 발굴 등 지원
3.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·용역의 온·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 지원
4.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·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
5.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연계 지원
6.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)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「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우선구매) 시장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·용역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고 및 평가) ① 공공기관, 공공기관이 출자·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

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공공기관이 출자·출연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추후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10조(협력관계 구축)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경기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
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관계법령발췌서

【지방공기업법】

- 제49조(설립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,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·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"장애인 표준사업장"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·고용비율 및 시설·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·장애인,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,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3(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) 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물품·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(이하 "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"이라 한다)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(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비용은 제외한다)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
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】

제3조(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8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.

1.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
2.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
3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
4. 장애인 근로자에게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

[별표 2]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(제3조제2호 관련)

상시 근로자수	장애인 고용인원	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
100명 미만	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	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
100명 이상 300명 미만		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+ 5명
300명 이상		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+ 20명

※ 비고: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.